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홈택스 이용신청서에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3. 3. ~ 3. 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4제1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81조의19제2항”을 “법 제81조의19제3항”으로,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81조의19제7항”을 “법 제81조의19제10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6호서식 뒤쪽, 별지 제6호의4서식, 별지 제16호의2서식(2) 및 별지 제28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6호의5서식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4제4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5제4항”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홈택스 이용신청서 ([]신규 []변경 []철회)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 인적 사항	① 성명(대표자)	② 상 호(법인명)
	③ 주민등록번호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사 용 자 구 분 []개인 []법인 []세무대리인 (개인, 법인)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⑦ 주 소 (전화번호 :)	
2. 신청 내용	⑧ 사용자 아이디 (ID) (※ 영어 또는 영어·숫자의 조합, 6~20자)	
	⑨ 비 밀 번 호 (※ 영어·숫자·특수문자의 조합, 9~15자)	
	⑩ 전자우편주소	⑪ 휴대전화번호
	☐ 국세청이 제공하는 국세정보 수신 동의 [] ☐ 국세청이 제공하는 국세정보 수신 동의[]	

「국세기본법」 제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홈택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3. 전자송달을 원하시는 경우 다음 란을 추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송달 신청	※ 본인의 전자송달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 등이 반드시 필요하며, 3회 연속하여 전자송달(국세정보통신망에 송달된 경우로 한정합니다)된 서류를 열람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송달 신청이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전자송달된 납부고지서에 의한 세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경우에는 전자송달 신청이 철회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공동인증서 등 보유 여부 보유 [] 미보유 []	
	[] 신청	[] 철회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납부고지서와 독촉장은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해야 하며, 국세정보통신망(홈택스)에 저장된 때에 「국세기본법」상 적법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별도의 서면 고지 또는 독촉은 하지 않습니다. 신청인 _____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수집항목) 성명, 상호, 사업장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수집목적) 홈택스 회원관리 및 온라인 국세행정서비스

(보유기간) **탈퇴 후 6개월**

위 항목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수집항목)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수집목적) 홈택스 회원관리 및 온라인 국세행정서비스

(보유기간) **탈퇴 후 6개월**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납세자 본인(서명 또는 인) :

■ 신청인이 만 14세미만 아동인 경우 위와 같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 동의

☐ 미동의

납세자 본인(서명 또는 인) :

법정대리인(서명 또는 인) :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따라 국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공받는자·제공항목) 국세정보통신망에 공개

(제공목적) 납세편의를 위한 국세행정서비스

(제공받는자 보유·이용기간)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시 또는 제공목적 완료시까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 위의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홈택스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 임 장

위 신청인 본인은 위임받은 사람에게 홈택스 이용신청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 임 자(신청인) _____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사 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 임 자와 의 관 계
	주 소 (전화번호: _____)		

준비하실 사항: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작성 방법

1. 신규·변경·철회: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 변경사유는 항목(⑨~⑪)의 변경과 전자고지 철회의 경우로 한정하며, 해당란에 새로 변경하는 내용만 적습니다.

2. 인적사항(① ~ ⑦)

① 성명: 법인이나 단체는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③ 주민등록번호: 법인이나 단체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④ 사업자등록번호: 개인(주민등록번호)으로 회원가입 하려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으며, 개인(사업자등록번호)·법인·세무대리인으로 회원가입을 하려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⑤ 사용자 구분: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 세무대리인의 경우 개인·법인 구분 없이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로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⑥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이 다수인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하고, 사업을 하지 않는 개인은 빈칸으로 두시면 됩니다.

⑦ 주소: 법인인 경우에는 빈칸으로 두시면 됩니다.

3. 신청내용(⑧ ~ ⑪)

⑧ 사용자 아이디(ID): 6 ~ 20자의 영어 또는 영어·숫자의 조합으로 하며, 숫자만으로 이루어진 조합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자 아이디는 수정이 불가능한 항목이므로 신중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⑨ 비밀번호: 9 ~ 15자의 영어·숫자·특수문자 3가지의 조합으로 하며, 사용자 아이디와 같아서는 안 됩니다.
(비밀번호는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⑩ 전자우편(이메일)주소: 전자고지의 통보, 각종 신고안내 등을 받아볼 수 있는 본인의 전자우편(이메일)주소를 적습니다.

* 국세관련 안내 자료를 전자우편(이메일)로 수신하려는 경우에는 수신 동의에 “√” 표시를 합니다.

⑪ 휴대전화번호: 각종 신고안내 등을 받아볼 수 있는 본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국세관련 안내 자료를 SMS로 수신하려는 경우에는 수신 동의에 “√” 표시를 합니다.

※ 「전자우편주소」와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4. 전자송달 신청

가. 전자송달을 새로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신청란에, 철회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철회란에 “√” 표시를 합니다.

나. 전자송달은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예) 카카오톡, 통신사PASS,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KB국민은행, NHN페이코], 생체인증(얼굴·지문)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5. 위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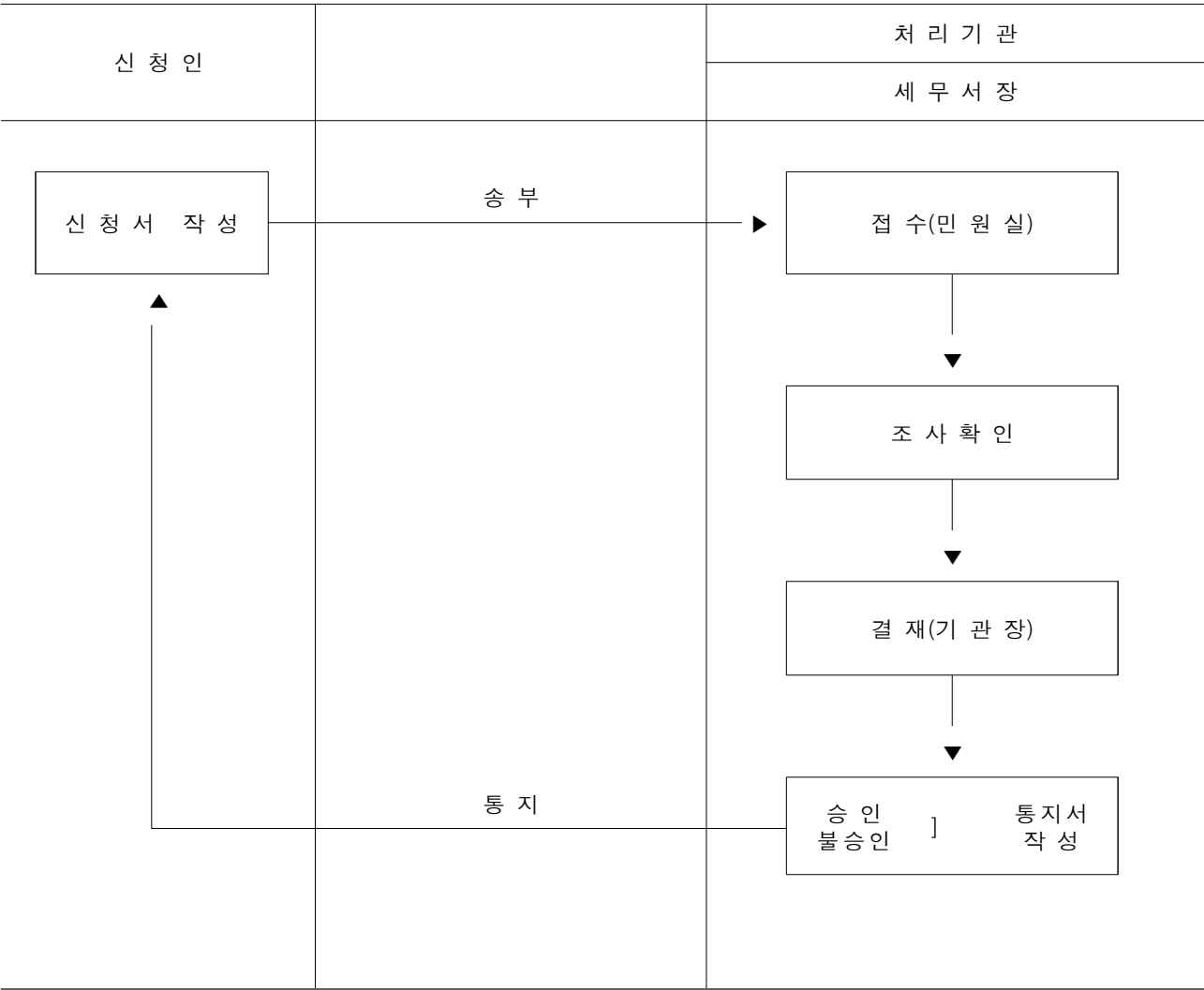
위임에 의한 신청 시 인감증명서가 없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및 기관 등은 해당 법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공문서 또는 대표자의 신분증(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작성 방법

※ '명칭'란에 주체를 단체가 아닌 개인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명칭(예시: “홍길동” 등 개인의 이름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재작성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명칭을 축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축약한 명칭 앞에 “()”를 표기하고 전체 명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 단체	명 칭		고유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신고 내용	선임(변경)연월일		신고사유				
			[]최초선임 []변 경				
	최초 선임 (변경 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변경 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본인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변경신고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아래의 위임장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본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인적 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신고인과의 관계			

「국세기본법」 제1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6개월

청구인	① 성 명		② 주 민 등 록 번 호	③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④ 주소(거소) 또는 영업소				⑤ 전화번호
	⑥ 상 호				

⑦ 법 정 신 고 일			⑧ 최 초 신 고 일	
⑨ 결정(경정)청구이유				
구 분	최 초 신 고		경 정 청 구	
⑩ 세 목				
⑪ 과 세 표 준 금 액				
⑫ 산 출 세 액				
⑬ 가 산 세 액				
⑭ 공제 및 감면세액				
⑮ 납 부 할 세 액				
⑯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거래은행	은행 지점	계좌번호	
⑰ 환 급 받 을 세 액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가목의 거래가격 조정신고서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나목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입증 서류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다목의 국외특수관계인 과세소득 조정 입증 서류	수 수 료 없 음
------	--	--------------

위 임 장	청구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자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대 리 인	사업장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자우편
			(서명 또는 인)		(우)	
		수행자	구분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 세무사 ☐ 공인회계사 ☐ 변호사						

접수증(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청구서)

성명	주 소	
첨부서류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가목의 거래가격 조정신고서 []	접수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나목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입증 서류 []	접수일자인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다목의 국외특수관계인 과세소득 조정 입증 서류 []	

작성방법

1. 청구인란의 인적사항(① ~ ⑥)은 청구일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다만, 합병 등으로 인해 상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상호 등을 ()안에 함께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2. ⑫ 산출세액: 각 세법에 따라 계산된 과세표준금액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을 말합니다.
3. ⑬ 가산세액: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그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가산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가산금은 구 「국세기본법」(법률 제160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합니다)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산금으로 2020년 1월 1일 전 납세의무분에 적용됩니다.
4. ⑭ 공제 및 감면세액: 특정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 세법에 따라 부여하는 세액공제 및 감면세액을 말합니다.
5. ⑮ 납부할 세액: ⑫ 산출세액에 ⑬ 가산세액을 더하고, ⑭ 공제 및 감면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말합니다.
6. ⑯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적습니다.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청구인)	성 명 (상 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전화번호: _____)		
	전화번호	전자우편번호	
사건번호 (접수번호)			
처분내용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적습니다)		
	※ _____연도 _____기분 _____세 _____원 부과처분		

본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 1.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개인이거나 수입금액이 3억원 이하이고 자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법인일 것
- 2.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고충민원의 금액이 5천만원 이하일 것
- 3.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고충민원일 것

「국세기본법」 제5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며, 재결청이 신청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
조세심판원장
귀하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7조의4(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① 법 제81조 의19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심 의 요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 른 취소 또는 변경 요청은 별지 제56호의6서식의 권리보호 심 의 요청서에 따른다.	제37조의4(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① ----- ----- ----- 제5항----- ----- ----- -----.
② 법 제81조의19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56호의7서식의 권리보 호 심의 요청 결과 통지서에 따 른다.	② 법 제81조의19제3항 ----- -- 제6항----- ----- ----- -----.
③ 법 제81조의19제7항에 따른 의견 진술의 신청은 별지 제56 호의8서식의 의견진술 신청서 에 따른다.	③ 법 제81조의19제10항----- ----- ----- -----.